【 "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" 】

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

수신 음성군체육회, 음성군게이트볼협회
(경유)
제목 실내체육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알림

1. 귀 기관(협회 및 단체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방안 개편에 따른 「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방안」이 최종 확정되어 우리 군은 2020. 11. 11.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 발령하였습니다.
3.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2020. 11. 13.(금)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 및 동호회(단체)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

○ 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
○ 과태료 부과 장소

◆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
<1단계>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 · 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 · 시위장, 의료기관 · 약국, 요양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

<1.5단계>
- 1단계 시설 · 장소 + 실외 스포츠 경기장

<2단계>
- 1.5단계 시설 · 장소 + 실내 전체,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

<2.5단계, 3단계>
- 2단계 시설 · 장소 +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
○ 대상시설: 실내체육시설 2개분야 13개소

구분	계	체육관	전전후 게이트볼장	비고
2개 분야	13개소	3	10	붙임1 참조

붙임 1. 음성군 실내 체육시설 현황 1부.
2.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부.
3. 과태료 부과기준 장소(시설) 변경 전 · 후 비교 1부. 끝.

시설관리사업소장 음성군 시설관리 사업소장인

주무관 정효정 운영팀장 양신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2020. 11. 13.

협조자 주무관 심윤주

시행 시설관리사업소-10659 (2020. 11. 13.) 접수

우 2770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 / http://www.eumseong.go.kr

전화번호 043-871-2482 팩스번호 043-871-1954 / feelhyo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【 사람과 사람 사이, 사회적 거리두기 】

■ 음성군 실내 체육시설 현황

구분	계	체육관	전전후게이트볼장	비고
2개분야	13개소	3	13	

연번	시설 유형	시설 명	비고
합계	2개 분야	13개소	
1	체육관	음성실내체육관	
2		삼성실내체육관	
3		대소국민체육센터	
4	그라운드골프장 및 전천후게이트볼장	음성 전천후게이트볼장	
5		덕생 전천후게이트볼장	
6		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	
7		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	
8		원남 전천후게이트볼장	
9		맹동 전천후게이트볼장	
10		대소 전천후게이트볼장	
11		삼성 전천후게이트볼장	
12		생극 전천후게이트볼장	
13		감곡 전천후게이트볼장	

음성군 공고 제2020 - 1713호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

음성군은 2020. 10. 15.(목)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 발령합니다.

○ 대 상 자 : 음성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○ 행정명령 내용 : 음성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

○ 적용범위(장소)

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

< 1단계 >
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, 지자체에 신고·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
< 1.5단계 >

- 1단계 시설·장소+실외 스포츠 경기장

< 2단계 >

- 1.5단계 시설·장소+실내 전체,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

< 2.5단계, 3단계 >

- 2단계 시설·장소+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
- (다중이용시설 등 : 중점·일반관리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시설(핵심방역수칙 의무화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• 중점관리시설(9종): 유흥시설 5종 (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시설 허가·신고면적150㎡ 이상)

• 일반관리시설(14종):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, 독서실·스터디카페

- (대중교통) 버스·기차·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

-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- (의료기관·약국) 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-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·종사자

- (종교시설) 종교시설(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- (실내 스포츠경기장) 실내 스포츠 행사(농구·배구 등)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- **(고위험 사업장)*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의 **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**
- **(500인 이상 모임·행사)** 지자체에 신고·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의 **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**

○ **마스크의 종류**

-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
-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인정

○ **착용법 관련(과태료 부과 대상)**

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-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
※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

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)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

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○ **적용기간** : 2020. 11. 10.(화) ~ 별도 해제 시

※ 계도기간 : 2020.10.13. ~ 2020.11.12.까지

○ **법적근거**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의2, 2의3, 2의4

○ **처분조항** : 법 제83조제 2항, 제4항, 제5항, 시행령 제33조

○ **과 태 료** :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
○ **부과권자**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에 의거 시장·군수

※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.

※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,4항,5항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확진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2020. 11. 11.

음 성 군 수

Page.006/006
To: 798731138
From: Eumseong County
2020-11-13 9:05 AM

○ 과태료 부과 장소 및 대상(2020. 10. 15. 변경 전)	○ 과태료 부과 장소 및 대상(2020. 11. 11. 변경 후)
- (다중이용시설 등 : 집합제한 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(핵심방역수칙 의무화)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 · 종사자 · 이용자 ·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 -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 · 이용자 -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 ·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- (대중교통) 버스기차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· 이용자 - (집회 · 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· 종사자 · 참석자	- (다중이용시설 등 : 중점 · 일반관리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 · 일반관리시설(핵심방역수칙 의무화)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 · **중점관리시설(9종)**: 유흥시설 5종 (클럽 ·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 · 카페(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150㎡ 이상) · **일반관리시설(14종)**: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 · 워터파크, 오락실 · 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이 · 미용업, 상점 · 마트 · 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 - (대중교통) 버스 · 기차 ·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- (집회 · 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 - (의료기관 · 약국) 의료기관 · 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 -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 · 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 · 종사자 - (종교시설) 종교시설(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)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 - (실내 스포츠경기장) 실내 스포츠행사(농구, 배구 등)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 - (고위험 사업장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(운영자) · 이용자 - (500인 이상 모임 · 행사) 지자체에 신고 · 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 · 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 · 이용자(참석자)